

#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1998. 12. 17.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 (98.12.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영 의

### 가.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운용수입금
  - 기타 수입금 등
- 기금운용계획 :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안 제3조)
- 융자 이자율은 연리 3~7%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안 제4조)
  - 마포구가 소유,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정비와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 재난 발생시 또는 우려시에 당해지역에서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 재난발생 및 발생위험이 높을시 인명구조, 피해시설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 재난대비 교육·훈련, 재난예방홍보,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민간소유시설로 당해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 소요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마포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로 그 비용의 일부 융자

○ 심의회

- 구성 : 재적위원 9인 이내로 마포구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 (안 제7조)
- 기능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의 결산, 기금의 용도로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제정조례안은 '97년8월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을 '98년2월24일 전문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은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외에 예금이자 및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융자금의 이자등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마포구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안 제8조에 규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용도로의 사용, 기금의 결산 및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금은 '99년도 예산안에 4,114만 8천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제출년월일 : 1998. 11.

번호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1)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 기금운용수입금
- (3) 기타 수입금 등.

나. 기금운용계획 :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안 제3조)

다. 용자 이자율은 연리 3~7%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 라. 기금의 운용(안 제4조)

- (1) 마포구가 소유,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 (2) 재난 발생시 또는 우려시에 당해지역에서 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 (3) 재난발생 및 발생위험이 높을시 인명구조, 피해시설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 (4) 재난대비 교육·훈련, 재난예방홍보,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 (5) 재난대비 물 자·자재·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 (6)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7) 민간소유시설로 당해 소유자, 점유자가 경제적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의 임대주택이주 소요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마포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로 그 비용의 일부용자.

마. 심의회

- (1)구성 : 재적위원 9인 이내로 마포구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  
(안 제7조)
- (2)기능 : 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의 결산, 기금의 용도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관리법(1997.8.30. 법률 제5404호) 제56조 내지 제57조  
재난관리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62호)제54조 내지 제55조

나. 예산조치 : 1999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등)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용자하는 경우에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방법, 용자조건, 용자금 상환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기금의 용자에 따른 이자율은 용자대상에 따라 연리 3퍼센트 내지 7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급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심관리대상시설 등(서울특별시마포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심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6.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7. 재난발생에 대비한 필요한 물자·자재·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8.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0조 및 영 제10조 내지 제14조 규정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회계공무원)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심의회는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 소속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심의회는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